

본 자료는 2004. 4. 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신·재생에너지팀
		담당자	유재열 과 장 박병찬 사무관
		전 화	02 - 2110 - 5425

《 PC통신 : go opengo, 천리안 : go epic, 인터넷 : <http://www.mocie.go.kr> 》

공공기관, 태양광·지열 등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

- ☐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의무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하여야 함
 - ☞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성·비교갈성 국산에너지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함
-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체에너지 설비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11개 대체에너지원별 설비로서, 해당기관은 자율적으로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 가능
- ☐ 공공기관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태양광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8천여호(25천kW) 이상을 보급하는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산업자원부(장관 : 李熙範)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중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힘

□ 우리나라는 총에너지 소비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 **2차공약기간('13~'17)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바,

○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수급불안정에 대비한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성·비교갈성·기술주도형 국산에너지인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함

□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붙임 자료)은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11개 용도별 시설물중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함

※ 용도별 시설물(건축법시행령) :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대체에너지 설비는 대체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태양열, 태양광 등의 11개 설비가 대상이 되며,

- 전기·열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설비중 공공기관이 하나 또는 다양한 복합설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대체에너지설비(대체에너지법 시행규칙) :

태양열(냉난방·온수), 태양광(전기), 풍력(전기), 지열(냉난방), 수소·연료
전지(전기),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열·전기) 등

□ 동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건축행정 절차와 충분한 연계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와 설계자의 이행성 제고 및 관련부처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함

○ 특히, 설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성능검사를 통해 「대체
에너지설비 인증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고해나갈 계획임

《 설비설치 추진절차 》

①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이용기관)

-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② 설치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보 (산업자원부)

-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무이용기관에 통보

③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신청서 제출 (의무이용기관)

- 산자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

④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산업자원부)

- 의무이용기관에 통보한 검토결과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

- 또한, 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 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설비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물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무적용에 따른 강제성을 완화함

※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면제(예시)

- 건축물의 입지조건에 의해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설치하더라도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건축물에 요구되는 기능과 설계조건이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시 건축물의 고유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우
- 연구용 또는 시범건축물로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위한 비용이 산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

- 이와 함께 산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장의 관심 제고와 함께 이행성을 높이도록 함

- 공공기관의 연간 대상건축물은 약4조1천억원으로서, 5% 이상을 투자할 경우 연간 약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태양광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8천여호(25천kW) 이상을 보급하는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 미국(정부건물의 태양열시설 설치의무화), 일본(중앙관공서 청사 태양광 설비 정비계획), 독일(베를린 태양의 정부청사 계획)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대체에너지 보급확대정책을 추진

□ 한편, 산업자원부는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세부규정 등을 마련함

○ 세부내용은 산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임

※ 홈페이지 주소 및 업무담당자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신재생에너지팀, 김기호 주무관(02-2110-5425)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 대체보급2팀, 이창후 팀장(031-260-4681)

첨부 :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 전문
2.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대상 공공기관(예시)
3. 외국의 대체에너지 이용 사례

《붙임 1》

대통령령 제 18344 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1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로 하고,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 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0. 묘지관련시설
11. 관광휴게시설

제16조의3(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의무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

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체에너지설비설치 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중전의 제1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의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u><신 설></u>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의무이용 대상건축물에 대한 지원</u>
제16조(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16조(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 ----- ----- 1.~4. (현행과 같음) 5. <u>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u> <u>제16조의2(대체에너지의무이용 대상건축물 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0. 묘지관련시설 11. 관광휴게시설 제16조의3(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의무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4(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생략) <신설> 제16조의3 (생략)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6(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무이용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의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의7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붙임 2》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대상 공공기관(예시)

구분	기 관 명
국가 기관	건설교통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관세청,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비상기획위원회, 산림청,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청소년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43)
지방 자치 단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6)
정부 투자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공사 (13)
정부 출연 기관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교통개발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암센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농림기술관리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산업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정성평가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원자력병원,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안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환경관리공단 (76)

구분	기관명
정부 출자 기업	(주)서울은행, (주)제일은행, 국정교과서(주),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대한매일신보사, 중소기업은행, 포항제철(주),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항만공사 (20)
기타 [※]	교통안전공단, 대한교원공제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부산교통공단, 산업기술정보원, 서울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운조합, 한국가스공사 등
※ 기타 : 1.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체, 정부출연기관이 납입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주, 상기 도표에 기재된 의무이용 대상 공공기관은 예시에 불과함

《붙임 3》

외국의 대체에너지 이용 사례

○ 일본 : 중앙 관공서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정비 계획

- 중앙 관공서 시설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각료회의시 총리에게 보고 (2001년 6월)

※ 도입현황 : 경제산업성(2.6kW), 중앙관공서 청사 17개시설 (537.6kW)

○ 독일 : 베를린 “태양의 정부청사” 계획

- 신규 건축되는 모든 정부건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재생 가능에너지원으로 충당

※ 도입현황 : 대통령궁 44kW, 연방법무부청사 20kW, 연방교육부건물 17kW, 연방 수상부 청사 151kW, 연방의회 건물 120kW,

○ 영국 : 대체에너지 의무생산(구매) 제도 시행

- 전력생산 업체로 하여금 2010년까지 생산전력의 10%를 대체에너지원에 의하여 생산(구매)할 것을 의무화(의무할당제)
- 영국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주관하여 추진중인 제도로 전력생산에 있어 단기·중기·장기적 대체에너지 의무생산(구매) 비율을 제시

○ 미국 (Arizona, Colorado, Florida, Hawaii, Maryland, Montana 등)

- 정부건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발 프로젝트에도 태양열시설의 설치 의무화
- 특히, Florida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급탕의 60%를 태양열에 의하도록 의무화 함.

○ 이스라엘 : 8층 이하 건물옥상에 태양열집열기 설치 의무화